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인건비 지급 문의



작성자 | 김다은 등록일 | 2024.10.25

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중인 연구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이에. 문의드립니다.

1.출산휴가(90일)

60일은 통상임금 지급, 30일은 통상임금중 고용보험에서 지급+나머지 인건비는 연구비에서 지급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30일 인건비 계상률은 어떻게 변경해야하는지?

2.육아휴직

연구비에서 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면, 인건비 계상률은 어떻게 바꿔줘야하는지? 미지급0%참여로 바꿔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주심에 미리 감사합니다.

↳ **답변자** | 박종선 2024.10.25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개인연구지원팀 박종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전휴휴가 90일 중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이는 연구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p. 172(2024.04.)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30일은 고용보험(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통상임금 차액이 있는 경우, 지급하는 차액만큼 인건비로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 계상률을 0%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박종선
부서: 개인연구지원팀
연락처: 042-869-6806